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-3호

우편법 시행령 제12조, 국제우편규정 제3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 2의 규정에 의한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-2호)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16년 1월 22일

우 정 사 업 본 부 장

「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」 중 정정

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“2. 국제특급우편물(EMS)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

정정 전(前)	정정 후(後)	정정사항
2. 국제특급우편물(EMS) 라. 익일배달 서비스 수수료 ㅇ 접수익일(J+1) : 4,500원	2. 국제특급우편물(EMS) 라.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 ㅇ 접수익일(J+1) : 4,500원 ㅇ 대상국가(도시) : 일본(도쿄, 오사카), 홍콩, 싱가포르, 베트남(하노이, 호치민) ㅇ 초특급서비스 접수관서 및 접수마감시각 : 별표	ㅇ 서비스명칭 변경 ㅇ 대상국가, 접수관서, 접수마감시각 추가

부 칙

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